

울산광역시중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6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2013.3.5
제출자 중구청장

1. 개정 이유

- 가. 현행 통장 임기는 2년이며 2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고 있어 연임 종료 후, 새로운 신청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 장기간 통장 공백으로 동 행정 수행의 애로가 많아 이러한 통의 경우 기존의 통장이 재연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,
- 나. 임기만료 전 통장 해촉 사유 중 『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』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해당 자구 수정

2. 주요 내용

- 가. 연임기간 종료 후 새로운 신청자 및 적임자가 없을 경우 기존 통장이 재연임 가능(안 제5조제3항)
- 나. 장애인 차별조항 자구 수정
 - 신체·정신상의 이상 ⇒ 개인사정
- 다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

3. 근거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 조치사항 : 해당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동의
- 라. 입법예고 : 2013. 1. 21 ~ 2. 15.(의견 없었음)

울산광역시중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및 같은조제5항 중 “자로서”를 각각 “사람으로서”로 하고, 같은조제2항, 같은조제3항 및 같은조제5항 중 “자”를 각각 “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다만, 연임기간 종료 후 새로운 신청자 및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재연임 할 수 있다.

제6조제1호 중 “신체·정신상의 이상”을 “개인사정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통·반장의 위촉) ① (생략)</p> <p>②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 하고 있는 30세 이상의 <u>자로서</u> 국가관 및 구민 의식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 하여 주민 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<u>활동적인자</u> 중 에서 통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③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업무수행 능 력이 인정되는 <u>자</u>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내에 거주 하고 있는 <u>자</u> 중에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 임감이 확고한 <u>자로서</u> 통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⑥ ~ ⑦ (생략)</p>	<p>제5조(통·반장의 위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사람으로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 -----</p> <p>③ ----- ----- <u>사람</u> ----- ----- <u>다만, 연임기간 종료 후 새로운 신청자 및 책임자가 없을 경우 재연임할 수 있다</u>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<u>사람</u> ----- ----- <u>사람으로서</u> -----</p> <p>⑥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통·반장의 해촉) (생략)</p> <p>1. <u>신체·정신상의 이상</u>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제6조(통·반장의 해촉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개인사정</u>----- 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편의제공) ① 통·반장이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 략 및 사용을 요구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<u>없는</u> <u>한</u>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10조(편의제공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없으면</u> -----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966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03. 05(화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03. 05(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3. 03. 14(목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김해권 행정지원국장)

- 가. 현행 통장 임기는 2년이며 2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고 있어 연임 종료 후, 새로운 신청자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 장기간 통장 공백으로 동 행정 수행의 애로가 많아 이러한 통의 경우 기존의 통장이 재연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,
- 나. 임기만료 전 통장 해촉 사유 중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해당 자구 수정

4. 주요내용

- 가. 연임기간 종료 후 새로운 신청자 및 책임자가 없을 경우 기존 통장이 재연임 가능(안 제5조제3항)
- 나. 장애인 차별조항 자구 수정
 - 신체 · 정신상의 이상 ⇒ 개인사정
- 다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

5. 관련법규

- 가. 「헌법」 제10조,
- 나.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제1호, 제19조 및 제25조

6. 검토의견

- 현행 통장의 임기는 2년이며 2회에 한하며 현행 조례상 위촉 후 6년 동안 한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금까지 각 동에서는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주택지역의 통장을 모집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갖고 있었으며 조례 개정시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